

제31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24. 10. 16.(수)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고종선

목 차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 1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3. 달성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558호
- 제출일: 2024년 9월 30일
- 제출자: 최재규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4년 10월 4일

2. 제안사유

- 군정에 직접적인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는 달성군민이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을 스스로 기획하고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육성·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형식적 관 주도적 협치체제에서 벗어나 군민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를 시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안 제3조~4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달성군 관내 민간단체가 진행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지방재정법」 제17조는 공금 지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비용의 지원을 명시한 사업 내용은 지역발전 사업 및 공익사업으로 이는 주민의 복리증진, 지방문화 진흥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상정안건에 명시된 사업 중 해맞이 사업의 경우 관내 읍·면 번영회, 새마을회, 자연보호협의회 등이 주관하고 있으며, 신년인사회는 달성 청년회의소(달성JC)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청년회의소는 1988년 창립하여 지역사회 개발, 사회문제 해소 등의 운동을 하는 비정부 기구(NGO)로 민간단체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에서 자치법규 상 근거를 마련하여 공익을 위해 지원하는 본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는 향후 민간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인지, 달성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또한 지속적인 보조금 지급에 따라, 민간단체가 추후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 수 있기에 조례 제정 취지에 맞추어 제2조 각 목의 사항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참여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단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등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할 것

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다. 구성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이 아닐 것

라.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등 정치적 활동과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등 종교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마.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2. “공익사업”이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민간단체로서 군에서 권장하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한다.

제4조(비용의 지원)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맞이, 신년인사회(군 단위 행사) 등 주민화합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참여를 권장하고 지원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자치법」(2024. 1. 9. 타법개정, 2024. 5. 17. 시행)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 「지방재정법」(2023. 8. 8. 타법개정, 2024. 5. 17. 시행)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2022. 10. 28. 일부 개정시행)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 및 그 피해의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559호
- 제 출 일: 2024년 9월 30일
- 제 출 자: 교육정책과장
- 회부일자: 2024년 10월 4일

2. 제안사유

- 달성남부도서관 명칭을 변경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 기능 중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기능을 추가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달성군립도서관 도서관운영위원회 기능 추가(안 제24조)
- 달성남부도서관 명칭 변경(안 별표1)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도서관법」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달성남부도서관 명칭 변경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기능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 ‘달성남부도서관’ 은 2022년 10월 도서관 명칭을 선정하여, 2023년 2월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상 군립도서관 명칭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 당초 일반도서관으로 설립 예정이었으나, 영유아·어린이 도서관으로 주 이용자 층이 변경됨에 따라 공감할 수 있는, 이용자 층에 적합한 명칭으로 선정하기 위해 직원 설문 및 심사를 통해 “달성어린이숲도서관” 으로 변경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음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 현재 달성군은 공공도서관 3개소[달성도서관, 달성군립도서관, 아트도서관(사립)] 및 작은도서관 11개소를 운영중입니다.

<대구 관내 타 자치구 도서관 현황>

구 분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군위군	달성군
개 수	9	23	13	4	14	9	17	1	14

※ 건립 예정인 달성군 도서관은 ① 비슬도서관, ②화석박물관이 있음. 건립예정 도서관까지 합할 경우 달성군은 16개

- 2014년 달성군립도서관이 개관한 이래, 2020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후, 제2차 중·장기 발전계획을 올해(2024년) 수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제2차 중·장기 발전계획에서는 군립도서관을 지역중앙관으로 운영하며, 지역구별 거점도서관을 통해 조직 운영 계획중이며 거점도서관 활용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형태 전환 모색, 통합 운영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2차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군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중전의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달성군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군립도서관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달성군립도서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174길 10-13(죽곡리)	지역중앙관
달성어린이숲 도서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중앙대로 231(중리)	거점도서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p> <p>1. ~ 6. (생략)</p> <p><신 설></p> <p>7. <u>기타</u>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p> <p>[별표1]</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33%;">명 칭</th> <th style="width: 33%;">위 치</th> <th style="width: 33%;">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달성군립 도서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달성남부 도서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d></td> </tr> </tbody> </table>	명 칭	위 치	비 고	달성군립 도서관	(생략)		달성남부 도서관	(생략)		<p>제24조(기능)-----</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달성군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u></p> <p>8. <u>그 밖에</u> -----</p> <p>---</p> <p>[별표 1]</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33%;">명 칭</th> <th style="width: 33%;">위 치</th> <th style="width: 33%;">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달성군립 도서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u>지역 중앙관</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u>달성 어린이숲 도서관</u></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u>거점 도서관</u></td> </tr> </tbody> </table>	명 칭	위 치	비 고	달성군립 도서관	(현행과 같음)	<u>지역 중앙관</u>	<u>달성 어린이숲 도서관</u>	(현행과 같음)	<u>거점 도서관</u>
명 칭	위 치	비 고																	
달성군립 도서관	(생략)																		
달성남부 도서관	(생략)																		
명 칭	위 치	비 고																	
달성군립 도서관	(현행과 같음)	<u>지역 중앙관</u>																	
<u>달성 어린이숲 도서관</u>	(현행과 같음)	<u>거점 도서관</u>																	

□ **도서관법**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 ⑤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제33조(국·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자료의 수집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기능 및 서비스 활성화와 도서관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 상호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을 협력하여야 한다.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달성군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562호
- 제 출 일: 2024년 9월 30일
- 제 출 자: 행복나눔과장
- 회부일자: 2024년 10월 4일

2. 제안사유

- 달성군자원봉사센터 위탁기간 만료 도래 및 수탁기관 재계약 의사 표시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적격으로 의결된 바, 의회 동의를 얻고 재계약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종사자수	비고
달성군자원봉사센터	화원읍 성천로 5,	여성문화 복지센터 2층 (245.05㎡)	8	

나.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 달성군자원봉사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조직 및 구성

구분	계	센터장	사무국장	정규직	계약직
인원	8	1	1	3	3

라. 위탁기간: 3년(2025. 1. 1. ~ 2027. 12. 31.)

마. 수탁기관 선정방식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평가

4. 민간위탁 재계약 경위

○ 2024. 8. : 민간위탁 재계약 신청 접수

※ 신청기관 :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 2024. 8. 26. ~ 30.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재계약 적정 판단)

※ 심의 결과(평균 70점 이상 시 적격, 최고·최저 제외 평균)

-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 86점

○ 향후일정

- 2024. 10. : 의회 동의

- 2024. 10. ~ 11. : 협약체결(2025. 1. 1. ~ 2027. 12. 31.)

- 2024. 11 : 공보 게재

- 2025. 1. : 위·수탁 개시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자원봉사활동기본법」

5.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달성군자원봉사센터 위탁기간(2022. 1. 1. ~ 2024.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과 위탁운영 재계약을 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달성군자원봉사센터는 2003년 설립되어 달성군 관내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지원·육성하기 위해 자원봉사와 관련한 ①시책사업, ②관리지원사업, ③교육훈련사업, ④맞춤형 특화사업, ⑤홍보사업, ⑥연대협력 및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여 공동체 구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곳입니다.
-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은 2013년 처음 수탁기간으로 선정 된 이후, 총 12년간 5회 재계약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 위탁기간이 만료 도래(2024. 12. 31.)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이 재계약 의사 표시를 해 오에 따라,
- 현 수탁기관을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①사업추진실적(찾아가는 교육 확대 및 대외 수상실적 등), ②감사 결과 반영(민간위탁 집행 부적절한 사항 군청자산에 등록), ③기관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 지침 기재 완료 ④서비스 개선계획(신규 발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86점(평균 70점 이상이면 재계약 가능)으로 적격함으로 의결되었습니다.
-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한 안정적인 운영 및 달성군자원봉사센터가 사회복지서비스 성격의 행정재산임을 고려할때, 민간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위탁 재계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관계법령 1부.
2. 사전적정성 검토자료 1부.
3. 재계약 사유서 1부. 끝.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시행규칙**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그 위탁사무 처리의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정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3(의회동의) ① 군수는 제4조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4. 1.)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그 동의안에 의회 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붙일 수 있다.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법규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범위 및 내용
4. 수탁기관 선정방식
5. 민간위탁 추진일정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제15조에 따른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 등 여부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대상기관의 인력·기구 및 재정부담능력
2. 수탁대상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3. 수탁대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역간 균형분포 등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의 선정

2.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적정성

3. 그 밖에 민간위탁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 또는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제5조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거나 선정된 기관의 대표 및 관계 임직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의회 의원(단, 민간위탁사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은 배제한다)

나. 의회에서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의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외 민간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전심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민간위탁사무별로 소관 부서장이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 구성 및 수당·여비 등의 지급,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재계약) ①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사무위탁의 재계약 적정성과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 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②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제4조의3제2항을 준용하되, 재계약 사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서

1 기본 검토사항

대상사무	달성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민간위탁 추진목적	○ 달성군자원봉사센터의 체계적인 운영 및 전문성 확보,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원봉사단을 지원하기 위해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센터의 운영 및 관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함.
위탁근거	○ 법적 근거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
위탁내용	○ 추진경위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자체방침 등 ○ 추진현황 - 최초 위탁 시부터 현재까지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 - 2002. 1. : 지체장애인협회달성군지회 수탁(2년단위 재계약) - 2007. 1. : 사단법인 선우복지마을 수탁(2년단위 재계약) - 2013. 1. :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수탁(2년단위 재계약) - 2019. 1. :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수탁(3년단위 재계약) ○ 위탁기간: 3년(2025. 1. 1. ~ 2027. 12. 31.) ○ 위탁내용 - 달성군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관리

적 정 성
검 토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위탁운영이 적합
 - 직접 운영 시 문제점
 - 운영 탄력성, 잦은 인사교류 등 연속성 저하
 -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확보가능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지역을 위해 애쓰는 봉사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향시 센터를 개방함으로써 공공성 확보
 - 관련 현장 전문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해 운영방향을 결정함으로써 안정성 확보
- 경제적 효율성 : 확보가능
 - 적절한 운영 예산 편성, 정산서 검토, 지도점검 등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 확보
-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다년간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며 얻은 지식들과 자원봉사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며 쌓은 노하우 및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재계약 의사가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자원과 인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음
-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운영중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수행 결과를 통해 성과 측정가능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확보 가능
 - 연간 1회 이상 민간위탁사무 자체 감사를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점검
- 위탁사무 책임을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의 적정성 여부
 -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인력이 유용하고 운영관리면에서 효율적임.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 되는지 여부
 -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 . . (부)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부)
 -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여)

<p>기 존 수 탁 기 관 및 선 정 방 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기관명 :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 수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 위탁금 : 567,237,000원 (2024년) ○ 위탁기관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p>수 탁 기 관 선 정 방 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기관명 :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위탁 심의 												
<p>민 간 위 탁 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 연간지원금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0%;">연도별</th> <th style="width: 20%;">민간위탁금(천원)</th> <th style="width: 70%;">세부 산출내역</th> </tr> </thead> <tbody> <tr> <td>2024년</td> <td>567,237</td> <td> 자원봉사센터 운영 371,153 코디네이터 83,084, 시책사업 88,000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25,000 </td> </tr> <tr> <td>2023년</td> <td>611,061</td> <td> 자원봉사센터 운영 404,696 코디네이터 81,165, 시책사업 100,200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25,000 </td> </tr> <tr> <td>2022년</td> <td>597,074</td> <td> 자원봉사센터 운영 391,994 코디네이터 77,380, 시책사업 102,700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25,000 </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2024년 시·군비 감축으로 예산 감소</p>	연도별	민간위탁금(천원)	세부 산출내역	2024년	567,237	자원봉사센터 운영 371,153 코디네이터 83,084, 시책사업 88,000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25,000	2023년	611,061	자원봉사센터 운영 404,696 코디네이터 81,165, 시책사업 100,200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25,000	2022년	597,074	자원봉사센터 운영 391,994 코디네이터 77,380, 시책사업 102,700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25,000
연도별	민간위탁금(천원)	세부 산출내역											
2024년	567,237	자원봉사센터 운영 371,153 코디네이터 83,084, 시책사업 88,000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25,000											
2023년	611,061	자원봉사센터 운영 404,696 코디네이터 81,165, 시책사업 100,200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25,000											
2022년	597,074	자원봉사센터 운영 391,994 코디네이터 77,380, 시책사업 102,700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25,000											
<p>기 대 효 과 및 향 후 계 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들의 협력과 지역 봉사단 응집력 강화를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음 ○ 지역특성을 바탕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및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확보를 지원 할 수 있음 ○ 다발적으로 활동하던 봉사단을 거점지로서 중심역할을 함과 동시에 협력을 통해 다양한 봉사를 추진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 												
<p>전 문 가 의 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민간위탁 재위탁이 적격함. 												

② 시설위탁 시 작성

시설개요	시설명	달성군자원봉사센터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5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별관 2층		
	시설규모	면적 245.05㎡		
	시설용도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개소일자	2003년 4월 11일		
	이용대상	자원봉사자 57,078명	종사자수	직원 8명
	보유장비	이동빨래차량(2.5톤) 및 스타렉스 등		
위치도				
지역여건	<p>○ 달성군의 면적은 총 426.61km²이며, 6개 읍과 3개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형적인 도농복합지역으로 관할지역이 넓어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젊은 이주민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노년층과 청년층이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 특성에 맞는 생애별 봉사단(청소년, 대학생, 가족, 중장년, 어르신 봉사단) 운영 및 지역을 찾아가는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p>			
현장사진	<p style="text-align: center;">〈자원봉사센터 사무실〉</p>			

수의협약(또는 재계약) 사유서

현황 및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시설의 수탁 가능 업체 수 : 24년 8월 기준 총 54개시설 수탁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시설 13곳, 국공립어린이집 41곳 ○ 예상 문제점 및 대처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상 문제점 : 달성군 면적 총 426.61km², 도농복합지역으로 관할지역이 넓고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대처방안 : 수탁시설 및 민·관의 정기적인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을 통해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있음 																						
수의 재계약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9조 ○ 수의협약(또는 재계약)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기관의 재계약 의사 표명 - 민간위탁심의회 재계약 적정여부 검토 결과 적정 ○ 공개 모집하는 경우 예상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에 따른 혼란 및 연속성 결여 - 예산 등의 추가 지출 비용 발생 우려 																						
대상기관 검토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위탁사무명</td> <td>달성군자원봉사센터 운영</td> </tr> <tr> <td>예산 및 기간</td> <td>달성군 출연금 21억원 1차(08년) : 10억원 / 2차(09년) : 10억원 / 3차(22년) : 1억원</td> </tr> <tr> <td>대상기관명(대표자)</td> <td>달성복지재단(강성환)</td> </tr> <tr> <td>주요사업</td> <td>복지자원 발굴 및 저소득층 지원 / 복지 프로그램개발 사업 등</td> </tr> <tr> <td>설립일자 및 주요연혁</td> <td>2008.10.15. 설립허가 / 2008.10.28. 설립등기</td> </tr> <tr> <td>인력현황</td> <td>총9명(임기제 1명 / 정규직 6명 / 비정규직 2명)</td> </tr> <tr> <td>근로자 고용안전성</td> <td>정규직비율 : 66% 이직률 : 0%</td> </tr> <tr> <td>재무현황 및 재정부담능력</td> <td>출연금21억, 이자수입 외 해당사항 없음</td> </tr> <tr> <td>기술수준(장비 및 시설 등)</td> <td>해당없음</td> </tr> <tr> <td>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td> <td>경영평가 등급 3년 연속 A등급 등</td> </tr> <tr> <td>성과평가결과 및 감사결과 (재계약시 작성)</td> <td>24년 경영평가(23년실적) A등급(90.43점) - 20년 공용차량 관리소홀 외 17건(조치완료) - 22년 지연배상금을 착오기재 외 13건(조치완료)</td> </tr> </table>	위탁사무명	달성군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 및 기간	달성군 출연금 21억원 1차(08년) : 10억원 / 2차(09년) : 10억원 / 3차(22년) : 1억원	대상기관명(대표자)	달성복지재단(강성환)	주요사업	복지자원 발굴 및 저소득층 지원 / 복지 프로그램개발 사업 등	설립일자 및 주요연혁	2008.10.15. 설립허가 / 2008.10.28. 설립등기	인력현황	총9명(임기제 1명 / 정규직 6명 / 비정규직 2명)	근로자 고용안전성	정규직비율 : 66% 이직률 : 0%	재무현황 및 재정부담능력	출연금21억, 이자수입 외 해당사항 없음	기술수준(장비 및 시설 등)	해당없음	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	경영평가 등급 3년 연속 A등급 등	성과평가결과 및 감사결과 (재계약시 작성)	24년 경영평가(23년실적) A등급(90.43점) - 20년 공용차량 관리소홀 외 17건(조치완료) - 22년 지연배상금을 착오기재 외 13건(조치완료)
위탁사무명	달성군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 및 기간	달성군 출연금 21억원 1차(08년) : 10억원 / 2차(09년) : 10억원 / 3차(22년) : 1억원																						
대상기관명(대표자)	달성복지재단(강성환)																						
주요사업	복지자원 발굴 및 저소득층 지원 / 복지 프로그램개발 사업 등																						
설립일자 및 주요연혁	2008.10.15. 설립허가 / 2008.10.28. 설립등기																						
인력현황	총9명(임기제 1명 / 정규직 6명 / 비정규직 2명)																						
근로자 고용안전성	정규직비율 : 66% 이직률 : 0%																						
재무현황 및 재정부담능력	출연금21억, 이자수입 외 해당사항 없음																						
기술수준(장비 및 시설 등)	해당없음																						
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	경영평가 등급 3년 연속 A등급 등																						
성과평가결과 및 감사결과 (재계약시 작성)	24년 경영평가(23년실적) A등급(90.43점) - 20년 공용차량 관리소홀 외 17건(조치완료) - 22년 지연배상금을 착오기재 외 13건(조치완료)																						

※ 수의협약(또는 재계약) 대상기관 검토사항

1. 수탁기관명 및 대표자 :

-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이사장 강성환)

2. 소재지 및 전화번호 :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5 / 053-617-9200

3. 설립목적

-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설립일자 및 연혁

년 월 일	내 용
2008.10.15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허가(보건복지부)
2008.10.28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등기

※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법인 연혁

2008. 02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08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발기인 총회
10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허가(보건복지부 161호)
10	초대이사장 백남덕 취임
11	달성군청소년센터 수탁
2009. 02	공립 죽곡휴먼시아어린이집 수탁 및 개원
03	논공축구장 수탁 및 개장
08	달성군노인복지관 수탁
10	공립 매곡어린이집 수탁
12	기부금품 모집단체 등록(대구광역시)



- 2010. 01 더불어 살아가는 천사운동 후원모금 사업 실시
- 03 공익성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기획재정부)
- 08 공립 서재휴먼시아어린이집 수탁 및 개원
- 10 제2대 이사장 박중석 취임
- 10 공립 하빈어린이집 수탁
- 2011. 03 공립 옥포어린이집 및 공립 구지어린이집 수탁
- 2012. 05 공립어린이집 연합 어린이날 행사(유지컬공연)
- 07 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 수탁
- 2013. 01 달성군자원봉사센터 수탁
- 10 달성시니어클럽 수탁
- 10 2013년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연합운동회 개최
- 11 제3대 이사장 김일규 취임
- 2014. 07 달성군건가다가통합센터시범운영기관 위탁
- 12 다사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
- 2015. 01 강림어린이집 위탁
- 06 제4대 서정길 이사장 취임
- 09 포산어린이집, 현풍천년나무어린이집 위탁
- 2016. 03 달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 03 달성시니어클럽 대구광역시 지정 위탁
- 12 반도유보라어린이집, 현풍행복어린이집 위탁



- 2017. 01 제5대 서정길 이사장 취임
- 02 달성군장난감도서관(화원) 위탁
- 09 호반베르디움, 우미린더포레스트, 죽곡한신희플러스, 에코동화아이위시 어린이집 위탁
- 09 다사읍 장난감도서관 위탁
- 2018. 01 제일풍경채센터럴, 호반아이숲, 일동미라주더파크어린이집 위탁
- 03 옥포읍 장난감도서관 위탁
- 04 구지면 장난감도서관 위탁
- 08 구지반도유보라, 삼정그린아이어린이집 위탁
- 10 달성군북부노인복지관 위탁
- 11 꿈터어린이집, 서재 장난감도서관 위탁
- 2019. 01 제6대 차준용 이사장 취임
- 02 화원이진캐스빌, 풍경채프라임, 옥포이진캐스빌



- 10 어린이집 위탁
- 2020. 01 대성베르힐, 중흥꿈자람어린이집 위탁
- 01 달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탁
- 02 르상트레빌, 국가산단이다음어린이집, 논공읍 장난감도서관 위탁
- 07 반도아이사랑, 줌파크, 옥포서한이다음 죽곡협성휴포레 어린이집 위탁
- 2021. 01 제7대 박성태 이사장 취임
- 02 유보라, 영무예다음어린이집 위탁
- 07 디에트르, 모아미래도어린이집 위탁
- 12 서재태왕아너스어린이집 위탁
- 2022. 03 제8대 차준용 이사장 취임
- 09 힐스테이트다사어린이집 위탁
- 11 꿈의숲어린이집 위탁
- 2023. 01 제9대 강성환 이사장 취임
- 02 다사랑어울림어린이집 위탁
- 03 달성군남부노인복지관 위탁
- 06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 12 예미지더센트럴, 별초롱어린이집 위탁



5. 주요사업

- 복지자원 발굴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 복지 프로그램개발 사업
- 복지시설 간 협력 지원사업
-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사업
- 복지시설 위탁운영 사업
(청소년센터, 노인복지관, 공립어린이집,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6. 대표자 및 임원 현황

직 위	성 명	주요 경력
이사장	강성환	달성복지재단 이사장
상임이사	김외식	달성복지재단상임이사
이 사	구명숙	前 달성노인복지센터 대표
이 사	윤영현	現 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장
이 사	이장희	前 이성철변호사 사무실 사무국장
이 사	이학도	現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이 사	임규태	現 다사농협 사외이사
이 사	전옥수	現 엠허브의원 총무 이사
이 사	정우선	前 달성군장애인복지관 관장
이 사	차한용	前 달성군 공무원(현풍면장, 환경과장)
감 사	서연희	現 세무사
감 사	장명진	前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7. 직원현황: 총 9명

직 위	성 명	자격증 소지현황	담당업무	근무기간	비고
상임이사	김외식	-	달성복지재단 운영 총괄	2023.01.18. ~현재	임기제
부장	신재혁	사회복지사2급	운영지원 및 후원 사업	2008.11.21. ~현재	정규직
선임사회복지사	오윤정	사회복지사1급	후원사업 (모금 및 배분담당)	2018.06.01. ~현재	정규직
선임사회복지사	이상철	보육교사1급	보육시설 관련업무 담당	2014.03.01. ~현재	정규직
선임사회복지사	정정호	사회복지사1급	복지시설 관련업무 담당	2018.06.01. ~현재	정규직
사회복지사	석주훈	사회복지사2급	달성군장난감 도서관 담당	2022.03.01. ~현재	정규직
선임사무원	곽진이	전산회계1급 사회복지사2급	행정 및 회계 담당	2018.06.01. ~현재	정규직
공동모금회 사업인력	강은빈	전산회계2급	후원사업 (모금 및 배분담당)	2022.06.01. ~현재	기간제
서무	이다은	사회복지사 2급	사무보조 업무 (보육)	2024.05.01. ~현재	기간제

8. 조직도



9. 재무현황

가. 재 산 : 총2,100,000천원

구 분	유 형	내 용	평가액(천원)
기본재산	부동산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2,100,000

나. 부 채: 해당없음

다. 수 입: 총55,131천원

내 용	연 수입액(천원)
이자 수입	55,131

10. 재협약 현황 및 향후 계획

재협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협약 회수: 5회, 총 수탁기간: 12년 - 재협약 기간 : 2년 3회, 3년 2회 																
서비스 개선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자원봉사자 : 22년 말 53,416명, 24년 6월 57,078명 ○ 지역밀착형 봉사단 발굴 일상적 자원봉사 실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봉사단 5개단체 발굴로 생활속 자원봉사 문화 확산 ○ 페이스북 홍보 강화 : 팔로워 56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건수 : 22년 223건, 24년 반기 349건 																
사업추진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우수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 저변확대 및 홍보를 위하여 관내 찾아가는 방문기초 교육 확대(23년 13건 233명, 24년 상반기 16건 299명) ○ 동종 시설 간 비교우위사항(외부 또는 자체 평가자료 별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지역이 넓은 지역 특성에 따른 특화사업으로 월 3회 이상 관내 읍면을 순회하며 이동복지종합서비스 및 이동빨래 서비스 운영 ○ 언론보도사항, 대외 수상실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보도 105건, 자원봉사자 표창 79건, 우수프로그램 수상4건 																
세입· 세출 내역서	<p>● 2025년 예산액 (단위 : 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e1f2;"> <th>총예산</th> <th>일반운영비</th> <th>사업비</th> <th>예비비 및 기타</th> </tr> </thead> <tbody> <tr> <td>585,949</td> <td>326,449</td> <td style="color: blue;">252,100</td> <td>7,400</td> </tr> </tbody> </table> <p>● 2026년 예산액 (단위 : 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e1f2;"> <th>총예산</th> <th>사무비</th> <th>사업비</th> <th>예비비 및 기타</th> </tr> </thead> <tbody> <tr> <td>605,541</td> <td>336,041</td> <td style="color: blue;">262,100</td> <td>7,400</td> </tr> </tbody> </table>	총예산	일반운영비	사업비	예비비 및 기타	585,949	326,449	252,100	7,400	총예산	사무비	사업비	예비비 및 기타	605,541	336,041	262,100	7,400
총예산	일반운영비	사업비	예비비 및 기타														
585,949	326,449	252,100	7,400														
총예산	사무비	사업비	예비비 및 기타														
605,541	336,041	262,100	7,400														

<p>성 과 평 가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일시: 2024. 8. 26 ~ 8. 30.(5일간, 서면심의) ○ 평가기관: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 평가내용: 달성군자원봉사센터 운영 성과평가 재계약 여부 심의 ○ 평가점수: 86점 ○ 총 평: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해 직원간 화합 및 지역특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필요 <p>※ 성과평가결과서 첨부</p>
<p>감 사 실 시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2023. 5 ○ 지적사항 1 : 민간위탁금 집행 부적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치결과 : 보조금 구매 자산 균청자산 등록 완료 ○ 지적사항 2 : 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 지침 기재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치결과 : 기관 홈페이지에 누락된 사항 기재 완료
<p>서 비 스 개 선 계 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목표: 자원봉사 신규 수요처 발굴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 개선방안: 변화하는 자원봉사 패러다임에 부응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p>향 후 추 진 계 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 저변확대를 위한 기초교육 확대 및 지역사회의 기업 및 다양한 기관들과 연대를 강화하여 자원봉사 인프라 확장 ○ 문제해결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일상의 자원봉사 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 강화

심 의 의 결 서

심의안건	▶ 달성군자원봉사센터 재계약(위탁) 심의
심의요지	▶ 심의대상 시설 및 수탁기관 - 시 설 명 : 달성군자원봉사센터 - 수탁법인 :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 재계약(위탁) 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
의결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 제15조에 따라, 달성군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평가한 결과 재계약이 (적정) 부적정 함을 의결함.
<p>위와 같이 의결한다.</p> <p>2024 . 8 . 30 .</p> <p>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p>	
위 원 장	배 춘 식
부위원장	공 진 환
위 원	신 달 호
위 원	이 상 봉
위 원	이 애 재
위 원	우 승 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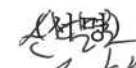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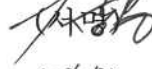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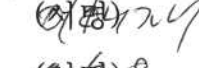

심 사 집 계 표

심사결과(점수)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합계	평균						
344	86	88	87	84	86	84	87

※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심사위원의 점수 합계 및 평균

심사위원 개별심사표를 집계한 결과, 평균점수 86 점으로 위
기관을 달성군자원봉사센터 재위탁(계약)기관으로 선정함이 적정/부적정
한 것으로 심사하였음을 확인함.

2024. 8. 30.

위원장	배 춘 식	
부위원장	공 진 환	
위원	신 달 호	
위원	이 상 봉	
위원	이 애 재	
위원	우 승 윤	

재위탁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

심사기준	심 사 항 목	배점	심사척도(점수)			평가 점수
			우수 (상)	보통 (중)	미흡 (하)	
합 계		100				
I. 수탁자의 적격성 (30점)	1. 법인유형 및 설립목적	5	5	3	1	
	2. 법인의 보유자산	10	10~7	6~4	3~1	
	3. 법인대표 및 이사회적 적합성	5	5	3	1	
	4. 법인의 사회복지 사업 운영실적	10	10~7	6~4	3~1	
II. 시설운영 의 전문성 및 책임성 (50점)	1. 법인의 사업수행 전문성	5	5	3	1	
	2. 센터장(내정자) 및 종사자의 전문성	5	5	3	1	
	3.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20	20~14	13~7	6~1	
	4.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방안	5	5	3	1	
	5. 최근 법인 재무제표	15	15~10	9~5	4~1	
	6.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7.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III. 지역사회 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능력 (20점)	1.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	10	10~7	6~4	3~1	
	2.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구축	5	5	3	1	
	3. 지역사회자원 동원	5	5	3	1	

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2024. .

달성군자원봉사센터 재위탁(계약) 심의위원회 위원 :

(서명 또는 인)